

대구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가단1411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박미혜, 김형일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8. 13.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접수 제130183호로 마친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천종호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채결

원고는 C의 대출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 채권자의 자동화대출(카드대출, 전화대출, 사이버대출)상품은 무방문, 무보증, 무서류 대출로써 대출조회 후 신청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가 없습니다.

대 출 내 역

구 분	제 1 대 출	제 2 대 출
대 출 명	D	E
대 출 자	C	C
대 출 금 액	금 30,000,000원	금 30,000,000원
대 출 일 자	2018. 12. 12.	2018. 12. 11.
만 기 일 자	2020. 10. 22.	2021. 12. 11.
약 정 이 자 율	9.9%	9.8%

2. C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피보전채권액

그런데 C는 위 대출금 이자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21. 10. 5.까지 C의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피보전채권으로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대출금잔액	편입이자금	상각후이자 연체금	소 계
제 1 대 출	30,000,000원	2,936,250원	53,013원	32,989,263원
제 2 대 출	30,000,000원	2,912,558원	52,602원	32,965,160원
합 계	60,000,000원	5,848,808원	105,615원	65,954,423원

3.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가. C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피고와 2020. 8. 13.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접수 제130183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대법원은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다. 또한, F연채신용조회에 따르면, C는 원고의 채무 외 한국주택금융공사(156,000,000원), G카드(12,887,000원), H카드(19,802,000원), I회사(14,406,000원)의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보입니다(추후 자세한 금액은 사실조 회로 입증하겠습니다)

라. 한편, C는 이건 대출거래약정상 주 채무자이고, 자신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자와의 신용거래상태가 악화되자,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후담보로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점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사해의사 및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등기를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3.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접수 제130183호로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표시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원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접수 제130183호로 경료한 각 근저당권.

1. 대구광역시 북구 대 159㎡

2.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대구 북구

계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

1층 49.81㎡

